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

발의연월일: 2020. 6. 4.

발 의 자:태영호·김기현·이용호

金炳旭・김정재・홍준표

이종배 · 신원식 · 조수진

이 용・지성호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임(안 제8조).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거주지로 신고한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다]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 서 "1세대 1주택"이라 하다)
- ④ 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

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현재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제8조(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 ----금액에서 6억원을 공 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제[실제 거주하는 주택(과세기 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주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등록법 10조에 따라 거주지 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로 신고한 주택을 말한다)을 소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 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공제하되, 그 공시가격이 6억원 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이하인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 한다]한 금액 -----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 ----. <단서 삭제> 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신 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 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 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생 략)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삭 제>

- 1. 2. (현행과 같음)
- 3.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1개의 주 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 택"이라 한다)
- ④ 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 로 본다.
-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 는 경우
 - 2. 현재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 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 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 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 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삭 제>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 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 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 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 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u>연</u> 령	<u>공 제 율</u>
<u>만 60세 이상 만</u> 65세 미만	100분의 10
<u>만 65세 이상 만</u>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 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 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 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 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 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 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보유기간	<u>공제율</u>
<u>5년 이상 10년</u> <u>미만</u>	100분의 20
<u>10년 이상 15년</u> <u>미만</u>	100분의 40
<u>15년 이상</u>	100분의 50

<삭 제>